

협회,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지회별 설명회 추진

- ◇ 습식선별시설 관련 대기배출시설 신고 이행안내 및 대응경과 설명 등
- ◇ 지회별 설명회 당시 요청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후속 대응추진 등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상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안내 및 그간의 대응경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회요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협회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6개 지회(경기서인,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를 대상으로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신고,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에서 입법예고('20.11.9~12.21)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아래참조)도 설명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 '20.1.1일부터 대기오염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기한 1년 연장(현행 '20.12.31 → 개정안 '21.12.31)

한편, 설명회에 참여한 회원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방지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방법 강구 등을 협회에 요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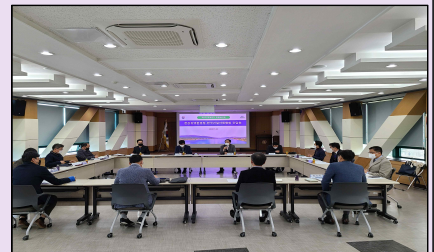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해당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처리시설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자가 측정 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의 후속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회, 한강유역환경청과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24일(화) 우리 협회는 정별철 회장과 수도권 소재 임원(최종민 부회장, 임동주, 김영갑, 최상우 이상 지회장, 김영철 협회감사, 최기식 조합감사)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정경윤 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처벌이 아닌 계도 중심의 지도 단속, △업계 대상으로 환경 법규 관련 실무교육 실시 및 상호 소통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등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정경윤 청장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 외에는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간담회 정례화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에서는 향후 다른 지역 유역·지방환경청과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 전경>



<참석자 기념촬영>